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역할을 강화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31조).
-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34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안 제30조의3 신설)

- 안 제30조의3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사업주 및 대표자가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업주와 대표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업주 및 대표자의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사업주 및 대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현행법 제26조제8항에서 ‘수탁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설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수탁자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수정함.
- 반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서는 동창회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창회 등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이 적용을 제외하도록 수정함.

< 수정 의 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

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 략)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② (생 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 략) ⑧ ----- ----- ----- ----- ----- ----- ----- 제30조 의2, 제30조의3 ----- ----- ----- ----- ----- -----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 30조, 제30조의3 ----- -----. ④ (현행과 같음)
---	---	--

2. 약칭의 범위 변경(안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안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종래 “분실·도난·유출”을 “유출등”으로 약칭하던 것을, “분실·도난·유출” 외에도 “위조·변조

○ 다만,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용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미 13번 사용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칭의 위치를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규정으로 옮기고, 해당 용어는 모두 약칭을 사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u>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u>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u> 이 되지 -----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u>분실·도난·유출(이하</u>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 ----- <u>분실·도난·유출·위조·</u>	제34조(개인정보 <u>유출등</u> 의 통지·신고) ① ----- ----- <u>유출등</u> 이 되었음-----

– 4 –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 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 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변조 또는 훼손(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 다)되었음 1. ~ 5. (생 략) 6.·7. (생 략) ② (생 략) ③ ~ ⑤ (생 략)	1. ~ 5. (생 략) 6.·7. (생 략) ② (생 략) ③ ~ ⑤ (생 략)
--	--	---

격의 과징금³⁾(이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 중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⁴⁾(매출액 산정 곤란시는 50억 원 이하)으로 상향함으로써 위반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 안 제64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안 부칙 제3조는 안 제64조의2제2항으로 신설되는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대상에 대한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둠.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의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징금은 i) 경제적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 ii)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iii)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으로 구분됨(법제기준과 실제, 2024년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441-444쪽).

4)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 규정한 입법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과징금)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과징금)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의2(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안 부칙 제3조제1항은 안 제6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나, 부칙 제3조제2항(안 제6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적용례) 및 같은 조 제3항(안 제6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적용례)과의 관계에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함.
- 안 제6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1차 위반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점과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위반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안 부칙 제3조제1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과 모순될 수 있음.
- 또한, 안 부칙 제3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안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1차 위반행위를 하고, 다시 같은 호에 해당하는 2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겠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용 의도가 부칙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신설 관련 적용례를 집행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함.

< 수 정 의 건 >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부 칙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u>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u> 적용한다 <신 설: 제1항에서 이동 및 수정> ③ (생 략)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삭 제> ① ----- ----- 발생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같은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6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원안과 같음)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